

# 보수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1. 2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에 의하여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보수규정개정)** 본회가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1.)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1.)
4. “승진”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내규에 의하여 현재의 직책보다 높은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6.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 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1.)
  -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적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1.)
  -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1.)
7.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1.)
8.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1.)

**제5조(적용대상자)** 연봉제는 일반직과 계약직 전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결정)** ① 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단, 기준액은 개인별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계약은 “별표2”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회장 간에 체결하며, 계약서 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본회와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7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① 당해 연도 기본 연봉은 전년도의 연봉과 전년도 남양주시 생활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한다. 단, 회장은 직원의 업무성적을 평가하여 차등을 두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3. 11. 23.)

② (개정 2021. 12. 21., 삭제 2023. 11. 23.)

**제8조(연봉책정)** ①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봉은 별표1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 표로 한다. 다만, 회장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연봉의 지급)** ①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5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보수의 지급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일수에 산입한다. (신설 2021. 12. 21.)

**제11조(연봉 기간 계산)**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신분변경 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 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수는 임명, 전보,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1.)

2. 퇴직 시에는 당월 연봉액, 수당 등은 근무일까지의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3.)

**제13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제4조 제3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②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제14조(징계처분자등의 연봉)** ① 인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기간 중 연봉은 연봉월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2. 감봉기간 중 연봉은 연봉월액의 1/3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5조(해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연봉의 60%를 지급한다.
3.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의 40%를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휴직자의 연봉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를 준용한다.

**제17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 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3장 수당 및 퇴직금 (개정 2021. 12. 21.)

**제18조(수당의 지급)** 수당은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19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개정 2021. 12. 21., 2023. 11. 23.)

## 제4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0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연봉재심청구) ①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에는 면담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재심청구절차는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장 보 칙

제22조(단수처리) 연봉계산 시 단수처리는 1,00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00원 미만은 절상한다. (개정 2023. 11. 23.)

제23조(비밀유지) 본회는 직원의 연봉 자료를 대외 기관에 제출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 관련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보고의무) 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봉제 시행 방안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신설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1. 23.)

## 연 봉 한 계 액 표

(제8조, 9조 관련)

(단 위 : 천 원 )

직 급 별		상한액	하한액	
직 종	직 급			
일반직 계약직	나급 전무(4급)	77,932	51,928	
	국장(5급)	63,693	45,237	
	라급 과장·팀장(6급)	55,877	39,859	
	마급	대리(7급)	49,202	남양주시 생활임금 이상
		주임(8급)		
		담당(9급)		

※ 연봉 한계액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공무원) 개정(연간 변동율) 사항을 적용한다.

[별표2]

## 연봉계약서 (제6조 관련)

남양주시체육회(이하 “갑”이라 함)와 직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함.

### 1. 연봉계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	--	--------	--	----	--

### 2.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 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미체결 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 체결 이후 당해 분 소급적용

###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금	원(W	)
------	---	-----	---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 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5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다. 연가보상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라. 상기 연봉에는 보수규정 제4조제3호에 의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모두 포함한다.

마. 계약 기간 중 승진 등의 신분 변동 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 기간 중 인사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5. 준수사항

가. 본회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 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남양주시체육회장(인)